

준비 서면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관련, 대법원 판결(2006. 7. 6. 선고 2005다 16041)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인 위법 판결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77다300 판례(1977. 9. 28.)에서의, 재임용 취지를 반영한,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의 해석,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는, 법률해석 변경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이 정한,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변경된 바 없다는 점.(참조: 2006. 4. 3., 4. 7. 준비서면과, 2006. 5. 26. 일자 변론조서)

2. 그러나,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에서의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의 해석,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 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한다.”

는, 위 77다300에서의 법률해석을 변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결이 아니므로, 법원조직법에 의한 판결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 해석이 아닌점.

3. 민사소송법 제 451조(재심사유) 제 1항 제 1호의 대법원 해석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판시사항]

재심대상인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그 재심대상판결을 심판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결론

따라서, 2006년 7월 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 2005다16041은,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 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 재심대상 위법 판결로서, 위 교수지위확인사건에 인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06년 7월 10일

위 원 고 김명호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tocourt.htm>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